



제6호 2003년10월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국제B/D301호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전화:02/522-4260~1 FAX:02/522-4383

2004년도 퇴비비료 보조공급방침 주요내용

정부의 2004년도 퇴비공급사업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시행주체인 농협중앙회에서도 보조공급 방침이 결정되었다. 2003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점을 비교, 알기쉽게 정리 하였다
가 지원비료종류

1. 유기질비료 혼합유기질, 혼합유박, 유기 복합비료(04년 신설)
2. 퇴비. 그린(1급)퇴비, 퇴비(원료는 비료공정규격상 「퇴비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로만 제조한 것에 한함)

나. 사업비(예산)내용

1. 사업량:638천톤(유기질비료6만톤, 퇴비528천톤, 그린퇴비5만톤)

03년 600천톤에서 3만8000톤증가 포당 지원금액 조정으로 인해

2. 소요예산:210억 (03년과 동일)

다. 보조지원 단가

1. 포당 토고지원 한도내 25%정률지원(20kg,포당 납품가격기준)
2. 비종별 포당 최고지원 한도:유기질비료. 퇴비비료650원, 그린퇴비 750원

03년기준은 퇴비의 경우 3천원이하는25%정률지원, 3천원이상은 750원 정액 지원하였고 유기질비료는 800원정액지원 하였음

라. 보조액 지원방법

1.계통별 보조액 배정기준

- 계통신청량 범위 이내에서 2003.11월 말 계통퇴비 및 계통유기질 공급실적(전산실적기준 금액60%, 물량40%)구성비 80%, 경지면적 구성비20%(논 면적30%,밭 면적70%)감안하여 배정

03년기준은 공급실적(전산금액)구성비50%, 경지면적 구성비 50%(논면적30%. 밭면적70%)감안 배정 하였음

마. 공급업체 구비요건(신규의 경우)

1.03.10.1 현재 비료생산업 등록업체로서 연간 판매실적이 퇴비는 1,000톤, 유기질비료는 1,500톤(500톤까지는 퇴비판매실적 인정 가능)이상인 업체(판매실적은 부가세 신고기준)

03년기준은 퇴비의 경우 연간 생산능력 1,000톤이상, 유기질비료의 경우는 연간 판매실적 5억원이상이었으나 기준을 모두 판매액으로 통일 하였고 퇴비는 신규진입이 어려워진 반면 유기질비료는 대폭 완화되었음
생산능력확인으 관할 단체장에서 추천기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음

마. 계약대상에서 제외

1. 03.11월말 기준 연간 판매물량이 600톤 미만인 업체

*공급업체 구비요건 강화에 따라 2005년부터는 연간 판매량 1,000톤미만 업체는 계약대상에서 제외예정

03년기준은 예약신청결과 전국 신청총량이 300톤 미만인 업체만 계약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공급업체 기준이 연간 판매량 1,000톤이상으로 강화 됨에 따라 신설되었음
※전 회원사는 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필히 3/4분기 부가세 신고를 철저히 할 것

마. 품질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

1. 품질관련 농업인 피해 발생 및 유통질서 문란업체;1년~2년
2. 춘추정기검사 검사시료 미채취 업체: 1회-1년, 2회-2년, 3회-3년 (휴업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되며 2003년 추기검사부터 적용)
3. 위반업체가 단순 대표자 또는 상호변경 등으로 위장: 참여제한

위 항목은 2003년에는 없던 것으로 농협은 물론 농과원의 단속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이에따라 전 회원사는 상,하반기로 1번씩 농협과 농과원에서 하는 시료채취에 적극 호응하며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외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불량퇴비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에서 회원사의 연간 최대 생산능력을 산출하여 이를 농협에 제출하고 농협은 각 업체의 최대생산능력을 반영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키로했다. 이는 업체가 생산 가능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하다 보니 미숙퇴비가 만들어 지거나 원자재의 출처가 불분명한 남의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가 생겨 대량의 불량비료를 유통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임. 이러한 이유를 들어 우리가 98년부터 주장해오던 생산능력 검증 확인이 이제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비료 생산업등록 변경사항신고 안내

98년이후 계속 실시되어온 퇴비보조사업은 해마다 그 제도가 정비 되어 가고있다.

200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앞에 언급하였으나 그 외 사항중 생산업등록사항에 변경사항 발생할 경우에 대하여 설명 하고자한다.

각 업체가 대표자나 상호등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협회로 변경사항을 통보해주면 그 사유가 인정되었을시 농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중앙회에서는 해당 지역본부로 통보 전산자료에 수정입력하므로써 납품지정업체로서의 자격이 승계 또는 변경되게 되어있다.

농업회사법인이나 주식회사로 되어있는 회사와 개인 사업자로 되어있는 경우가 달라 그 절차를 설명하고자 함. 세법상 법인의 경우는 법인 구성원중에 대표자가 바뀌는 것은 자산이나 실적등 모든업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지 않는다.

이 경우 대표자 변경에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납품지정업체로서의 권한이 승계된다.

증빙서류중 공장등록증에 기재사항을 꼭 변경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장 임대

사업자로 오인되어 농협지정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재 시,도에 생산업등록을 할 때는 공장임대차 계약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나 농협납품 지정업체 기준에는 공장임대 사업자는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사업의 지속성이없고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자산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계절차가 좀 틀려진다.

우선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려지므로 다음 절차를 거쳐야 전산자료 입력을 바꿀수 있다.

상품이 농협납품에 진행중이라면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지정서를 새로이 발급받아 도 지부에 제출하고 입금통장도 다시금 제시하여야 납품업무가 승계되어 질 수 있다.

간혹 전번 사업자등록을 먼저 폐업신고한 경우 업무에 공백이 생겨 고생을 하는경우가 종종있다.

하반기 신규입회 회원소개

경기 1개업체, 충북1개업체, 전남 4개업체 이상 6개 업체이다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지바이오텍	황국현	경기도 이천시 울면 월포리 714-21	031)641-6980
(주)정도	정연근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청리 377	043)851-9180
풍년비료	김금덕	전남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 474-2	061)271-1130
향토영농	박승찬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362-1	061)281-8770
유암산업(주)	박문주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829-2	061)337-0630
동악낙농	유현	전남 곡성군 경면 마전리31-10	061)363-0959

지바이오텍은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해있고 양돈장내에 공장시설이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겸하고있으며 돈분을 주로운 퇴비생산에 다년간 경험이있다.

주식회사 정도는 충주시 신니에 위치해 있으며 양돈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돈분 처리를한 경력을 갖고있다.

풍년비료는 전남 화순에 위치해 있으며 양돈장과 같이 있어 주로 돈분처리를 하고 있다. 톱밥은 순수한 내륙지방에서 생산되는 활엽수피를 사용하고 있다. 시설점검을 갔을 때 후숙더미에서 곰팡이와 지렁이가 자라는 모습이 특이했다.

향토영농조합은 전남 무안에 위치하고 있다 옛 한우영농조합자리에 시설을 보완하여 새롭게 시작한 업체임

유암산업은 전남 나주에 위치하고 있고 주로 EM(유효미생물)균을 배양하여 그것을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 제품과는 달리 70% 이상이 미강을 균주와 혼합한 제품으로 만들어진다.

1급그린퇴비등록업체



금년 우수생산업체 추천은 1급그린퇴비가 신설됨에 따라 3년간 농협납품실적 1억이상 유지하고 행처처분이상 처벌사항이 없어야 하는 조건외에 1급 그린퇴비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상업체는 몇군데 있었으나 1급그린퇴비등록이 늦어져서 경북 영천에있는 영창영농조합만이 유일하게 추천하게 되었다. 영창영농대표 김재근 사장님은 관내에서 오랫동안 유기농업을 실천하시고 유기농업협회 및 농업기술자협회 지부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출신임. 제품은 이번 우수업체 지정을 받기위하여 1급퇴비를 신청하면서 혼합유기질도 같이 등록을하여 제품에 다양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미 2002년도에 지정받은 우수생산업체들은 2004년까지 1급그린퇴비등록을 마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차질없길 바란다.



농림부에 따르면 1998년 걸프전을 계기로

국내 비료값 동결을 위해 지원하기 시작한 연간 800억~900억원에 이르는 비료차손보전사업 예산을 점차 줄여 2005년이후에는 전면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 예산을 앞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을 늘리는 데 사용하면 농가도 부담을 덜 수 있고 친환경농업 정책과도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및 관계자들의 말이다. 현재 친환경농업에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을 설정하여 농약등 화학합성물이 포함된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사용하기 편하고 사용후 효과도 빠른 화학비료의 역할을 대신할 제품이라면 당연히 퇴비등 유기질 비료밖에는 없을것이다. 그러나 퇴비등 유기질비료는 사용이나 효과면에서 화학비료와 같을수는 없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공급을 확대해도 농가가 따라주지 않으면 지원을 늘려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가 어렵다”며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질비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홍보 등에도 지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의 홍보도 홍보이지만 업계의 홍보도 앞으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선 명칭부터도 문제이다. 유기성 자재로 만든 비료는 국내 비료관리법상 크게 두가지로 분리되는데 보통 비료에 속해있는 유기질비료와 퇴비를 비롯한 13종류의 부산물비료가 있다. 넓은 의미에서 유기질 비료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것도 소비자가 알기쉽게 정비가 빨리 이루어져야할 부분이다. 특히 퇴비는 미생물에 의한 발효과정을 거쳐 제조되기 때문에 식물과 토양에는 더없이 좋은 영양물질이 되지만 발효도중에 미생물의 먹이가되어 손실되는 질소 성분이 많아 분해를 거치지 않은 순수 곡물인 유기질 비료보다는 비효 면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식물을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먹기 좋게 익힌 음식과 그렇지 않은 날 음식과 비교할만 하다 하겠다.

식물로 보면 사람은 소화기관이 몸안에 있지만 식물은 토양자체가 소화기관이라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생태계 순환법칙을 보아도 식물→대동물(초식동물→육식동물)→소동물→미

생물→식물로 이어진다. 원 자재면에서도 퇴비의 자재는 주로 대동물의 소화기관을 거친 부산물이고 유기질비료의 자재는 대동물의 사료 그 자체인것이다. 결국 대동물의 소화기관을 거친 부산물 만으로도 전 국토가 질소과다 현상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대다수가 수입되는 동물의 사료가 바로 농지로 들어간다 면 여러 가지로 큰 문제가 아닐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데도 화학비료의 지원이 중단되니까 화학비료 공장에서는 앞다투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려고 하고있다. 우리 업계뿐만 아니라 농업전체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닐수 없다. 다행히 2004년 공급계획에서는 이런 우리의 염려가 반영된 계획이 발표된 것은 무엇보다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이런 중에 퇴비의 등급화로 1급 그린퇴비가 탄생하게 되었다. 물론 산자부의 불법바로인 GR퇴비에 쫓겨 줄속으로 생긴듯한 인상은 있지만 퇴비의 등급화는 일단 실행이 되었다. 이 그린퇴비의 공정규격을 보면 기존의 퇴비와 같이 축분만 가지고는 유기물 함량등 그 공정규격을 맞추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현재 유기질비료라고 판매되는 제품과 원자재면에서 별차이가 없어진다. 오히려 단순 배합에 끝나고 마는 유기질비료제조 공정과는 달리 발효처리를 해야한다는 어려운점을 안고있다. 앞서 말했듯이 기존퇴비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1급 그린퇴비는 힘든 공정과 좋은자재를 사용하여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도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유명무실하게 될지도모른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확실히 다른 제품의 차별성만이 퇴비의 등급화를 성공시킬 수 있을것이다. 비싼 유기질비료보다 훨씬더 인정받는 퇴비의 출현을 기대해본다

유통질서 문란 행위 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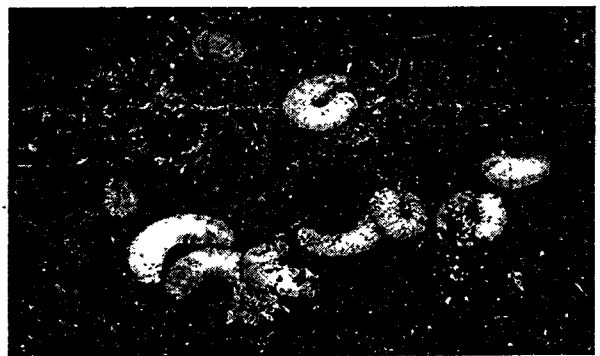
품질관련 농업인 피해발생 및 유통질서 문란 행위업체에 대해서 적발시 1년에서 2년간 지정이 해지된다.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같은 업계에 종사는 업체로서 서로간 상도의를 지켜가며 정경당당한 경쟁을 통해 성장해 나

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 업체에서는 농협납품계약시 운송비 문제로 추가약정할 수있다는 조항을 악 이용 하여 유통질서를 문란케하고 전체적인 보조사업에 불신임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강원도의 한 농협에서는 처음 중앙회와 계약시 포대당 2,200원에 계약을 하고 납품추가 약정서에는 운반비 포함 1,800원에 재계약하여 공급을 하였다. 이렇게 이중계약으로 보조퇴비사업의 공정성을 실추시킨 업체도 문제 이지만 이를 이용 납품업체에 무조건 싼금액에 납품할 것을 강요한 조합의 담당자도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결국 업체는 농협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우며 이는 곧 불량퇴비공급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기때문이다. 또한 그 차액만큼에 돈이 자칫하면 검은거래의 원인이 될 수 도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행위는 업계전체에 과당경쟁과 불신만 초래하게되어 업계발전에 큰 암적인 존재가 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미납회비 및 친조금 협조요청

협회운영에 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2003년 회비미납업체는 2004년도 사업이 시작되기 전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조건에 절대적으로 협력해주시는 회원사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단체는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협조하지 않는 업체는 단체의 필요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퇴비더미 속에 굼벵이